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Public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윤상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본고는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실태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함의를 기술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보장사업, 의료보장사업, 자기운전지원사업, 세금 및 요금 감면사업, 기타 사업 등 사업 영역에 따라 장애인의 수혜율에 커다란 차이를 보인 가운데,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세금 및 요금 감면 사업의 수혜율이 가장 높았으며, 현금 급여인 장애수당 등의 소득보장사업의 수혜율이 가장 낮았다. 장애인복지기관 중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재활병·의원,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이용 희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더불어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로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여전히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장애인정책의 기본 방향을 소득 지원 및 의료서비스 확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주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을 충족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¹⁾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은 약 60여 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크게 경제적 지원 사업과 시설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사업은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로 하여금 소득보장의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참여와 통합의 기회를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들이

라 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과 같이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에서부터, 통신사용료나 대중교통수단 운임비 감면 등과 같은 각종 요금 및 이용료 감면제도, 그리고 LPG 차량 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소득세 추가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시설 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등 18개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에서 장애인을 대상

1) 장애인복지법 외에도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는 장애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현금 급여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과 비교할 때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 수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으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러한 서비스에는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재활서비스, 특수교육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본 고에서는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현 수준에서 장애인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으며, 어떠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장애인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복지욕구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장애인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받은 혜택의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받고 있다’와 ‘약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36.9%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0%로 나타나 등록 이후의 혜택에 불만족스러운 장애인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 조사에 비해 등록 이후의 혜택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서 지난 3년간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등 장애인복지사업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장루·요루장애가 타 장애유형에 비해 등록 이후의 혜택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부 및 이용 경험

다음으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소득보장 사업, 의료보장 사업,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 각종 세금 및 요금 감면 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소득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수혜자가 가장 많은 장애수당 지급에 대한 인지도가 67.9%로서 타 소득보장 사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26.1%), 장애아동수당 지급(25.6%), 장애인자립자금 대여(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실시에 대한 인지도가 41.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보조기구 무료 교부(39.7%),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39.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1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등 타 복지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의 경우에는 82.8%의 장애인이 동 사업을 알고 있었으며, LPG 연료사용 허용과 LPG 세금인상분 지원의 경우에도 각각 81.2%, 69.9%의 장애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의 경우에도 73.3%의 장애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PG 연료 사용 허용 등의 장

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수준이나 장애정도와 관계없는 보편적 수급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 사업의 수혜 대상 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제도 내적 요소와 아울러 자동차의 보편화라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각종 세금 및 요금감면 사업의 경우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타 장애인복지사업에 비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의 경우 인지도가 92.7%로서 모든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인지율을 기록했으며,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도 90.2%로서 높은 인지율을 나타냈다. 또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및 할인의 인지율은 67.4%, 세금공제 및 면제의 인지율은 48.4%로서 역시 높은 인지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앞서의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제도의 적용 대상이 보편적이라는 점과 함께 정보화 추세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점차 활성화 되는 데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기타 사업은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및도우미 파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은 상대적으로 타 사업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27.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21.8%, 주택관련 분양 알선 및 가산점 부여 20.3%, 장애인 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 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05년 조사에 비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인지도는 모든 사업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이루어진

표 1.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많이 받고 있다	2.5	2.5	1.3	2.3	4.9	6.4	3.4	10.2	9.0	4.0	3.4	4.4	4.3	2.7	4.6	3.1
약간 받고 있다	32.3	37.2	32.9	30.6	31.1	39.5	41.4	37.3	45.1	41.8	42.8	36.8	42.2	27.1	35.9	33.8
보통이다	8.2	10.3	8.3	8.7	10.0	13.2	13.2	10.1	9.6	10.4	11.3	15.8	7.5	8.6	10.0	9.0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51.1	44.2	47.8	52.4	49.1	35.8	38.0	40.4	33.3	39.7	38.8	41.2	43.0	52.3	43.5	48.0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6.0	5.8	9.8	6.1	4.9	5.1	4.0	2.0	3.0	4.1	3.7	1.8	3.0	9.2	6.0	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1	207,383	15,103	140,079	12,329	84,780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6	8,881	2,137,226

표 2. 장애인복지사업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수당지급	66.0	67.1	65.5	61.5	71.9	83.5	72.1	87.6	70.9	66.4	69.8	70.3	75.5	62.5	80.7	67.9
장애아동수당지급	23.8	23.7	24.2	19.7	28.7	48.8	54.6	27.4	25.5	25.5	24.0	34.0	33.6	24.7	26.2	25.6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25.5	23.9	22.5	20.8	25.2	43.8	48.0	26.7	32.3	24.2	23.2	32.7	28.0	24.1	27.7	26.1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15.6	15.0	13.6	8.9	11.2	18.0	22.9	18.6	18.5	16.2	13.9	24.0	23.3	11.8	11.2	15.0
장애인의료비지원	37.2	40.2	37.8	35.0	37.8	47.5	43.9	54.4	57.1	35.1	43.7	50.5	37.7	33.5	49.4	39.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15.6	21.0	17.6	15.5	20.2	32.9	28.2	39.8	24.2	21.2	22.4	22.3	22.9	19.2	32.3	18.9
장애인보조기구 무료 교부	39.5	45.1	38.7	36.6	34.9	37.0	54.0	36.0	49.0	40.6	40.5	43.8	42.7	36.6	30.9	39.7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 (의료급여) 실시	38.8	51.6	39.8	55.1	38.0	32.2	43.4	31.3	47.8	39.0	48.2	40.1	46.6	61.4	29.5	41.4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84.8	85.3	82.8	75.9	81.1	76.0	95.8	70.7	90.3	89.0	86.5	95.3	89.5	81.6	75.5	82.8
LPG 연료 사용 허용	84.0	84.4	78.2	71.6	78.3	74.0	94.9	68.8	90.0	87.6	87.5	93.4	90.3	81.8	74.6	81.2
LPG 세금인상분 지원	73.0	72.0	66.1	61.1	64.9	66.1	82.9	53.4	76.2	77.0	78.0	78.1	79.2	65.6	60.3	69.9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	75.6	79.7	68.7	63.3	69.6	70.1	92.3	57.6	85.2	84.3	81.4	85.4	83.6	65.8	62.7	73.3
세금공제 및 면제	49.2	54.0	47.0	43.7	49.5	46.3	74.6	35.7	51.3	54.7	46.8	58.1	57.7	48.2	37.0	48.4
교통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91.7	88.7	90.1	86.8	86.5	86.1	94.6	85.1	95.1	95.0	94.9	93.9	97.1	92.0	86.2	90.2
통신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93.7	92.2	92.4	90.8	92.7	90.2	96.3	85.2	97.6	96.6	97.5	96.2	98.3	90.8	91.8	92.7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 및 할인	69.0	65.2	66.5	60.6	65.3	66.2	85.5	61.2	80.1	69.5	70.8	81.9	76.1	66.6	59.5	67.4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19.1	21.8	20.0	16.0	19.7	28.0	36.4	26.0	25.7	18.8	21.1	21.8	29.3	16.4	23.8	20.3
장애인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	15.5	15.7	15.2	12.7	21.3	57.3	90.0	18.8	13.9	16.0	15.2	15.1	21.4	13.7	18.0	18.5
활동보조서비스	24.1	37.6	33.1	20.7	25.8	38.9	57.2	24.7	27.8	23.6	23.8	31.5	33.5	26.8	22.7	27.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20.1	25.3	26.0	16.3	19.2	27.0	35.9	24.9	27.6	18.0	18.7	28.3	25.5	19.1	20.9	21.8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 확충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정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소득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의 인지도 순위와 마찬가지로 장애수당 수혜 경험이 전

체의 22.9%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2.2%), 장애아동수당 지급(1.1%), 장애인자립자금 대여(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 자립자금의 경우 전체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이용경험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제도의 수

혜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의료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실시 사업에 대한 경험률이 10.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사업(8.2%), 장애인 의료비 지원(7.9%), 장애인보조기구 무료 교부(3.4%)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의 인지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등 타 복지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용경험률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의 경우에는 39.9%의 장애인이 동 사업의 수혜를 경험하였으며, LPG 연료사용 허용과 LPG 세금인상분 지원의 경우에도 각각 28.6%, 21.6%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의 경우에도 26.3%의 장애인이 제도의 혜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각종 세금 및 요금감면 사업의 경우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타 장애인복지사업에 비해 사업에 대한 이용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의 경우 경험률이 82.1%로서 모든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이용경험률을 기록했으며,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과 공공시설 요금 감면 및 할인의 이용경험률은 각각 70.3%, 35.3%로서 역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기타 사업 중 장애인 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가 전체의 4.3%의 장애인이 동 사업의 수혜를 경험하였으며, 주택관련 분양 알선 및 가산점 부여의 경우 전체의 3.3%의 장애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비교적 제도 도입의 역사가 짧고 수혜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1.9%와 0.9%의 수혜율을 나타냈다.

3.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인지, 이용 경험 및 이용 희망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여러 기관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용한 경험은 있는지,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우선 장애인복지기관 인지도와 관련하여, 전체 18개 장애인복지기관 중 가장 장애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전체의 74.3%가 알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특수학교(특수학급)는 69.6%의 장애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5년 조사와 동일한 결과로서 장애인복지관과 특수학교(특수학급)가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복지관련 실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어서 이동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50.0%로 나타났으며, 정신의료기관과 직업재활시설이 각각 46.9%와 35.5%의 인지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동지원서비스센터는 다른 장애인복지기관에 비해 설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면에서 역사가 오래된 타 기관들을 압도하고 있어 비교적 빠르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계의 운

표 3.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수당지급	18.8	21.6	20.5	17.0	22.7	41.7	8.1	67.3	29.8	16.4	27.2	20.7	21.5	12.2	49.5	22.9
장애이동수당지급	0.3	0.9	0.1	0.5	3.2	9.8	11.9	1.1	0.1	2.1	0.0	1.9	3.2	0.4	1.0	1.1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2.2	0.6	1.4	1.9	2.3	5.6	1.2	3.5	3.6	1.4	1.4	3.6	2.6	0.4	5.2	2.2
장애인자립지급 대여	0.7	0.2	0.5	0.4	0.4	0.8	0.0	0.5	0.7	0.7	0.4	0.2	0.0	0.3	0.0	0.6
장애인의료비지원	7.1	7.1	5.9	5.4	6.8	15.0	7.4	14.9	16.1	5.1	10.7	13.3	10.7	3.1	16.1	7.9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5.6	9.0	6.9	5.1	7.5	17.1	6.5	34.8	12.1	6.8	10.1	5.8	7.7	4.6	23.9	8.2
장애인보조기구 무료교부	2.8	9.0	4.5	3.7	0.6	1.0	0.3	0.5	3.2	0.7	2.2	1.2	1.8	2.4	0.2	3.4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실시	8.0	19.6	8.6	31.6	5.3	1.4	1.2	0.8	5.1	3.9	9.8	4.3	3.8	8.8	0.1	10.6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43.1	45.6	37.5	30.7	33.5	34.2	63.5	13.8	48.3	54.5	47.2	50.4	41.2	31.4	16.1	39.9
LPG 연료 사용 허용	29.7	32.9	28.2	26.0	24.5	24.9	45.6	10.3	36.1	37.1	30.8	25.4	30.4	22.1	12.3	28.6
LPG 세금인상분 지원	21.1	29.1	19.4	19.1	19.3	23.6	44.2	8.7	32.5	34.1	28.3	18.9	27.1	12.6	9.5	21.6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	22.8	42.5	21.3	23.0	26.9	35.7	63.7	15.3	44.7	53.5	47.2	31.3	34.1	12.0	13.5	26.3
세금공제 및 면제	22.7	31.1	19.3	22.2	25.0	21.0	44.2	8.5	26.3	29.9	25.0	27.8	26.6	21.5	9.4	22.8
교통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73.7	63.1	71.2	70.8	68.6	55.9	76.4	55.0	81.1	83.3	72.5	76.8	85.7	72.2	67.2	70.3
통신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84.9	82.5	81.7	81.2	84.2	67.9	84.1	59.3	92.0	91.4	90.9	89.3	95.4	79.3	82.1	82.1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 및 할인	36.3	28.4	37.5	31.9	32.9	41.2	63.6	24.2	44.5	39.2	35.0	41.5	43.2	29.1	26.1	35.3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3.8	2.9	2.4	3.3	3.3	1.7	1.2	2.5	4.3	3.3	2.5	1.2	3.6	1.6	2.8	3.3
장애인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	0.6	3.3	1.2	3.3	7.7	41.5	72.1	0.0	0.1	3.7	0.0	0.3	2.1	0.5	2.0	4.3
활동보조서비스	1.1	6.4	1.2	0.7	0.1	4.1	10.6	2.1	0.5	0.1	0.7	0.5	0.9	0.1	1.0	1.9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0.9	2.0	0.3	0.2	0.0	1.0	0.7	0.5	0.9	0.2	0.3	0.0	0.8	0.7	0.5	0.9

동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 및 사회적 관심이 증 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아동보육시설(34.2%), 장애인재활 병·의원(30.3%), 수화통역센터(24.4%), 장애인체육관(22.7%), 점자도서관(22.2%) 등의 기관이 비교적 장애인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신보건센터(9.9%),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10.8%) 등의 기관은 장애인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표 4.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직업재활시설	35.7	33.4	33.7	24.7	30.5	47.5	66.7	42.8	41.4	33.1	30.1	43.4	47.0	29.4	35.5	35.5
장애인복지관	76.2	70.8	69.0	68.3	73.2	83.1	94.1	70.5	74.9	72.2	71.3	72.9	82.4	72.9	80.3	74.3
장애인 재활병·의원	31.5	31.8	26.8	22.1	31.8	31.0	48.3	30.8	39.8	25.7	28.0	41.1	33.4	26.3	29.7	30.3
주간·단기보호시설	11.4	18.6	13.4	10.7	13.7	30.5	56.9	21.0	12.7	9.8	13.7	15.2	12.5	12.1	13.4	14.2
장애인체육관	23.5	20.2	18.9	19.6	21.7	27.4	41.3	23.6	24.3	21.7	24.9	22.5	25.4	19.4	24.3	22.7
장애인심부름센터	19.5	19.3	24.5	16.3	19.8	24.5	29.6	22.8	19.4	21.0	20.1	19.9	25.2	16.1	22.5	20.2
수화통역센터	23.3	18.2	27.4	28.8	33.0	30.7	37.5	22.3	23.4	20.4	26.1	34.9	30.0	23.2	27.9	24.4
정신의료기관	45.2	42.2	46.0	43.0	45.2	54.1	51.7	77.0	50.1	43.0	49.6	54.7	43.8	44.3	53.0	46.9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13.1	11.5	14.0	9.5	14.1	22.5	24.0	32.8	14.0	13.0	15.3	22.1	16.4	12.3	16.4	14.3
이동지원서비스센터	49.6	53.4	55.0	40.6	48.2	51.8	74.5	41.0	60.8	55.5	51.5	63.8	68.7	50.8	49.2	50.0
장애인정보교육기관	19.4	18.9	19.2	12.4	15.8	27.3	38.7	24.4	22.9	16.6	13.6	19.8	29.3	14.4	20.7	19.5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6.6	16.2	16.0	12.0	14.9	29.0	45.4	19.6	18.0	14.5	13.9	20.6	23.5	13.5	15.7	17.1
점자도서관	22.0	17.5	28.7	17.8	22.0	26.2	45.3	22.3	21.7	22.3	18.3	30.3	28.2	18.3	20.7	22.2
정신보건센터	8.1	9.5	7.4	7.4	11.2	18.0	25.5	32.2	8.5	7.6	9.6	12.9	12.7	9.8	12.5	9.9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69.6	66.8	68.8	63.4	70.3	83.4	97.0	62.5	75.7	73.5	65.8	82.6	81.6	67.9	75.8	69.6
특수교육지원센터	16.9	13.8	15.2	12.6	18.5	27.3	45.0	18.5	16.5	14.7	15.2	20.5	21.6	14.1	16.5	16.9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9.7	11.0	11.6	8.7	12.0	17.6	28.4	16.6	8.1	9.4	7.6	11.5	9.6	7.3	8.2	10.8
장애아동보육시설	34.9	27.6	30.4	29.1	36.4	47.9	74.1	32.2	40.8	31.3	31.6	40.8	42.6	34.3	40.4	34.2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이용경험률을 살펴보았다. 18개 장애인복지기관 중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앞서의 인지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전체의 12.9%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특수학교(특수학급)와 이동지원서비스센터가 각각 4.4%, 3.5%의 이용률을 보여 주었다. 장애인복지관과 특수학교(특수학급)이 이용률 순위에서 1, 2위를 차지한 것은 이들 두 기관이 전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장애인복지기관이라는 점이 반

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재활병의원의 이용율이 각각 2.7%, 2.4%, 1.6%로 그 뒤를 이었는데, 특히 직업재활서비스와 의료재활서비스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재활병의원의 이용률이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는 여러 모로 아쉬움을 주는 결과이다. 반면에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0.1%)과 점자도서관(0.2%) 등은 상대적으로 타 기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5.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직업재활시설	1.7	1.2	1.4	0.5	1.6	10.7	4.2	9.6	1.2	0.3	0.2	0.5	1.6	0.0	1.6	2.4
장애인복지관	10.6	16.1	10.2	9.7	15.4	36.8	59.4	12.4	5.8	8.1	3.7	3.4	12.1	7.3	12.0	12.9
장애인 재활병·의원	1.6	3.6	0.2	0.8	1.3	2.8	5.8	1.3	0.8	0.1	0.7	0.7	0.0	0.4	1.3	1.6
주간·단기보호시설	0.0	1.6	0.2	0.2	0.0	4.7	8.2	1.2	0.0	0.0	0.3	0.0	0.0	0.0	0.3	0.6
장애인체육관	1.0	1.1	0.7	1.4	1.0	3.4	10.1	0.1	0.3	0.7	0.0	0.2	0.3	0.0	1.5	1.2
장애인심부름센터	0.4	0.4	2.5	0.0	0.0	0.6	0.4	0.6	0.1	0.5	0.3	0.0	0.0	0.0	0.5	0.6
수화통역센터	0.1	0.0	0.2	4.6	1.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5
정신의료기관	0.1	0.5	0.3	0.1	0.9	5.5	2.7	52.8	0.6	0.3	0.1	0.4	1.3	0.0	2.8	2.7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0.1	0.0	0.0	0.0	0.0	0.7	0.0	5.5	0.0	0.0	0.0	0.4	0.0	0.0	0.3	0.3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4	8.4	4.3	0.7	0.8	1.7	5.8	1.6	3.1	1.5	2.2	1.1	1.0	0.4	0.6	3.5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6	1.7	0.9	0.7	0.4	2.7	4.7	3.0	1.4	0.5	0.7	1.7	0.9	0.5	2.2	1.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0.3	0.3	0.1	0.2	0.0	1.5	0.9	0.4	0.0	0.0	0.1	0.0	0.0	0.0	0.1	0.3
점자도서관	0.0	0.0	2.1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정신보건센터	0.1	0.0	0.0	0.0	0.0	1.5	0.4	7.8	0.0	0.0	0.0	0.0	0.0	0.0	0.8	0.5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0.6	3.0	1.6	3.9	5.9	41.8	69.6	1.1	0.1	0.7	0.0	0.0	2.0	0.0	1.3	4.4
특수교육지원센터	0.0	0.6	0.2	0.2	1.1	3.3	13.3	0.0	0.0	0.0	0.0	0.0	0.0	0.0	0.3	0.4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0.0	0.1	0.3	0.0	0.4	0.3	1.1	0.4	0.4	0.0	0.0	0.0	0.7	0.0	0.0	0.1
장애아동보육시설	0.0	0.7	0.0	0.8	0.8	9.8	25.6	0.0	0.0	0.0	0.0	0.0	0.0	0.0	0.0	1.0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기관 향후 이용 희망 정도를 살펴보았다. 18개 장애인복지 기관 중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전체의 36.3%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장애인 재활병·의원과 이동지원서비스센터가 각각 28.9%와 27.4%로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용 희망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장애인체육관(14.8%)과 장애인심부름센터(14.6%)의 이용 희망률도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 기관들이 주로 의료재활서

비스와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볼 때, 장애의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와 원활한 이동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원하는 장애인들의 욕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용 희망률이 낮은 하위 기관을 살펴 보면, 장애아동보육시설(0.7%), 점자도서관(0.8%), 수화통역센터(0.8%), 정신질환자 사회 복지시설(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기관이 주로 특정 연령대(아동기) 및 특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기관임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할

표 6.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이용 희망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직업재활시설	8.8	6.8	4.5	7.1	15.0	36.2	50.9	17.8	11.0	8.8	4.1	15.8	15.8	6.9	22.1	10.5
장애인복지관	36.8	36.9	30.9	31.0	35.4	50.8	72.0	29.4	34.9	40.3	26.8	28.0	36.0	27.3	41.4	36.3
장애인 재활병·의원	32.8	40.8	18.4	16.5	22.8	30.2	32.1	13.7	17.9	25.3	21.4	10.5	19.9	14.8	24.0	28.9
주간·단기보호시설	5.2	18.8	4.8	7.0	7.2	23.6	34.3	9.3	7.2	9.4	9.6	5.4	3.1	6.6	13.2	8.4
장애인체육관	14.6	12.5	9.3	10.9	15.4	35.2	50.2	13.2	10.0	12.7	6.1	16.9	21.1	9.9	20.3	14.8
장애인심부름센터	12.3	21.2	21.6	13.0	14.8	14.5	25.0	10.6	19.0	15.6	17.1	8.5	8.9	8.9	13.8	14.6
수화통역센터	0.0	0.1	0.3	6.7	6.6	0.4	1.3	0.5	0.1	0.3	0.1	0.0	0.9	0.3	0.0	0.8
정신의료기관	0.3	1.2	0.4	0.0	1.1	10.9	7.0	54.0	0.0	0.0	0.0	0.2	1.3	0.0	2.1	3.2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0.0	0.4	0.0	0.4	0.5	6.2	2.6	24.2	0.2	0.0	0.7	0.6	0.0	0.0	1.3	1.5
이동지원서비스센터	25.6	44.4	27.8	22.3	22.6	25.5	34.6	15.9	38.7	30.3	30.9	21.4	17.9	23.0	24.4	27.4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7.7	13.0	13.5	9.7	17.5	28.9	50.7	14.7	16.9	15.8	9.4	16.8	34.6	14.0	23.8	16.7
장애인자립생활센터	7.2	6.4	8.8	5.5	9.5	29.8	44.0	13.0	7.3	7.8	3.3	9.5	12.7	5.1	17.4	9.1
점자도서관	0.1	0.2	6.3	0.0	0.0	0.0	0.7	0.5	0.0	0.0	0.0	0.0	0.0	0.0	0.0	0.8
정신보건센터	1.1	0.9	2.0	0.8	1.4	8.7	9.0	23.5	1.8	2.1	0.1	1.8	2.8	1.4	5.3	2.6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0.2	2.1	0.4	0.4	3.8	28.7	67.3	0.5	0.1	0.7	0.0	0.5	0.0	0.0	1.6	2.7
특수교육지원센터	0.7	1.9	1.1	1.8	4.1	23.5	52.9	0.2	0.0	0.6	0.1	0.7	2.7	0.0	1.9	2.7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6.2	4.5	6.5	4.4	8.6	29.9	42.6	9.5	6.9	4.5	2.8	5.9	8.8	5.1	14.7	7.8
장애아동보육시설	0.0	1.2	0.1	0.2	2.6	6.7	15.9	0.0	0.0	0.2	0.0	0.5	0.0	0.0	0.0	0.7

수 있으며,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 희망이 저조한 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

4. 장애인의 복지 욕구

장애인들에게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들이 첫 번째 요구로 꼽은 것은 의료보장으로 전체의 30.1%가

희망하였다. 다음으로는 소득보장으로 21.9%의 장애인이 요구하였다. 2000년 및 2005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다른 복지욕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의료보장이 소득보장보다 더 높은 욕구를 보인 것은 2008년 조사의 특기할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어서 주거보장이 15.4%로서 지난 2005년 조사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급증한

2)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소득보장 50.3%, 의료보장 17.9% 였으며,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소득보장 48.9%, 의료보

것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장애인들이 주거를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하는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고용보장(8.6%)과 장애인 인권보장(5.7%)에 대한 욕구도 적지 않은 비중을 나타냈다.

5. 정책적 함의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실태는 향후 제도 개선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

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보장사업, 의료보장사업, 자가운전지원사업, 세금 및 요금 감면사업, 기타 사업 등 사업 영역에 따라 장애인의 수혜율이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었다. 사업별 수혜율에 있어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세금 및 요금 감면 사업의 수혜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인 경우 경험률이 82.1%로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자가운전지원사업의 수혜율

이 역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을 이용한 장애인이 전체의 39.9%로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수혜율이 높은 사업은 소득보장사업인데, 특히 장애수당의 수혜율이 22.9%로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2005년 경증 장애인 확대, 2007년 차상위계층 확대 등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의료보장 사업의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급 비율이 전체의 10.9%로서 상대적으로 타 의료보장사업에 비해 수혜율이 높았다. 이는 2005년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확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 사업에 비해 가장 낮은 수혜율을 보인 기타 사업 중에서는 장애인 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가 전체의 4.3%로서 가장 높았다.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소득보장사업과 의료보장사업이 여전히 수혜율이 낮은 것은 이들 사업이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별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며, 주택 관련 분양 우선 및 가산점 부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기타 사업 수혜율이 매우 낮은 것은 장애인의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또는 서비스 수급 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기관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장애인복지기관 확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으로 꼽힌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그 동안 지속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서 현재 약 160개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있음을 감안할 때, 시군구 당 1개소를 목표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확충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의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와 원활한 이동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원하는 장애인들의 욕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장애인 재활병·의원과 이동지원서비스센터 등도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장애인들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중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의료보장(30.1%)과 소득보장(21.9%)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보장의 욕구가 소득보장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특기할 만한 점이지만, 전체 요구사항 중에서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압도적 비중을 점하고 있는 이러한 결과는 1980년 장애인실태조사가 실시된 이래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장애인들의 열악한 경제상태와 함께 지속적인 장애의 치료 및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정부의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사업의 수준이 아직도 미흡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적용 대상 확대와 급여 수준의 제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보장 영역에 있어서는 의료

표 7.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주거보장	15.0	16.8	15.1	14.2	16.3	15.3	15.9	16.0	19.6	21.4	16.0	15.0	22.4	13.8	27.9	15.4
장애예방	3.2	3.6	4.1	4.5	4.9	3.4	0.9	6.0	1.8	4.1	6.0	3.5	4.2	4.4	3.8	3.6
보육·교육보장	2.4	2.1	1.9	2.9	6.7	18.3	28.1	1.7	1.7	1.6	1.5	3.5	2.7	1.3	2.4	3.5
의료보장	29.7	36.5	34.0	33.8	23.0	12.2	8.1	24.1	39.7	39.9	39.7	44.6	24.9	39.9	18.3	30.1
이동권보장	3.3	4.5	4.7	1.2	1.4	1.3	0.1	1.0	2.5	1.8	2.2	0.4	0.5	2.1	1.6	3.1
고용보장	9.4	4.1	8.3	7.4	9.6	11.9	8.8	8.0	6.8	7.4	4.2	6.2	12.5	6.8	11.8	8.6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4	1.1	0.1	2.5	2.4	1.7	4.3	1.3	0.7	1.0	1.7	0.8	1.1	1.1	0.7	1.4
소득보장	22.9	21.3	21.2	21.7	22.2	17.6	9.9	25.7	16.9	15.5	22.1	15.2	14.9	20.1	18.8	21.9
장애인 인권보장	5.7	4.5	2.5	6.2	5.2	8.7	15.2	10.0	6.0	4.1	2.1	4.7	5.5	3.7	8.6	5.7
장애인 인식개선	4.2	3.0	5.3	3.5	5.1	6.7	8.2	4.4	3.3	1.9	1.8	3.5	8.9	3.7	5.1	4.3
없음	1.8	2.3	1.6	2.0	2.3	2.3	0.0	1.1	0.9	1.0	2.3	1.8	2.5	2.5	0.7	1.8
기타	0.8	0.3	1.2	0.1	1.0	0.5	0.4	0.7	0.1	0.3	0.5	0.8	0.0	0.8	0.3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132,116	219,156	220,062	207,383	15,102	140,080	12,330	84,781	48,284	14,606	14,392	6,513	2,187	11,356	8,881	2,137,229

장 19.0% 로서 공히 소득보장이 의료보장보다 월등히 높았었다.

비지원사업 확대 및 개선, 공공의료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보장 영역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기초장애연금’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들

은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보전 급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볼 때, 가입자의 기여에 기반한 장애연금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기초 장애연금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